[별지서식 제18호의11] (제71조 관련) <신설 2021. 4. 2.><개정 2021. 9. 16.>

보증승인통지서

보증신청인(　　건설㈜, 대표　　)이 신청한 도심주택특약보증이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- 아　　래 -

1. 보증승인내용

사 업 명	
보증승인금액	일금_____
대 출 금 액	일금_____ (대출실행일 :　　년　월　일)
보 증 기 간	
보증채권자	
승인유효기간	
승 인 조 건	

2. 유의사항

가. 이 통지가 있더라도 주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등 공사의 내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

나. 상기 대출실행일에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 공사와 사전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. 보증 승인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월이며, 보증의 승인을 받은 한도내에서 분할하여 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 최초 분할보증에 한하여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.

라. 매입기관은 매입대금 지급 시 대출기관(또는 신탁사 관리계좌)에 직접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　년　월　일

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대리인 _____ 지사장 _____ ㊞

담당자 HUG _____ (전화번호:_____)

매입기관 _____ (전화번호:_____)